

[가스공사 시공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2003년 9월 30일 공포)의 개정으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되도록 현대해상 및 LG화재해상보험과 공동 인수방식으로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할인적용하기로 하였다.

[1] 기본보험료

- 대인배상 : 930원(사망 1인당 : 6,000만원 / 부상·후유증장해 : 약관상 금액)
- 대물금액 : 293원(사고당 3억원)
- 1대당 합계금액 : 1,223원

- LG화재해상보험 : 1~10%(보험자 판단)

[2] 시공대수 할인율(1년간 시공한 가스보일러를 합산한 대수임)

- 200대 이상 : 5%
- 500대 이상 : 7%
- 1,000대 이상 : 10%

[5] 각 보험사의 최대할인율

- 현대해상보험 : 27.1%(891.5원)
- LG화재해상보험 : 27.1%(89.1원)

[3] 단체보험 할인율(협회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 시 할인율임)

- 현대해상보험 : 10%
- LG화재해상보험 : 10%

[6] 보험가입절차

- off-line : 보험가입의뢰(회원사)→설문조사 및 청약서 발송(보험사)→설문조사 및 청약서 날인 후 발송(회원사)→보험료 안내(보험사)→입금 확인→증권/시공확인서
- on-line : 인터넷 접속(협회 홈페이지)→보험료 안내(회원사)→입금 확인→증권/시공확인서 (3개월 소요 예정)

[4] 보험사별 할인(범위할인 : 피보험자의 사고 손해율에 따라 ±10% 차등)

- 현대해상보험 : 1~10%(보험자 판단)

[7] 보험가입 문의처 및 단체보험 가입안내(현대해상)

- 전화번호 : 02-730-2317~8
- Fex번호 : 02-730-2319
- e-mail : sykwon@tizzone.com

[가스보일러 시공자를 위한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관련 질의 회신]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2003년 5월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 개정으로 용량이 20만 킬로칼로리(kcal) 미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을 시공(설치 또는 변경공사)하는 업체는 해당 보일러의 시공작업에 대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는 받게 됩니다.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동 보험에 대한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회원사에 대한 보험가입 및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해상 가스배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현대해상 가스배상센터로 연락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신속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1년간 예상시공 대수만 알려주시면 보험료 안내문과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면 유리한 점은?

단체 할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가스배상센터를 이용하시면 개정 법률 내용, 가스배상 책임보험 상품내용, 보험가입 및 보험사고 관련 상담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절차는?

우선 현대해상 가스배상센터로 전화하셔서 센터에서 안내해드리는 1)보험료 안내문을 검토하신 후 가입을 원하시면 2)해당보험료를 입금하시고 함께 보내드리는 3)청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입금증사본,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세 가지를 가스배상센터로 팩스를 이용해 보내주시면 바로 계약처리가 완료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료는 도시가스 온수보일러의 연간 예상시공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당 기본보험료(1,223원)에 예상시공대수 및 시공대수 규모 할인

(규모별 차등), 경험할인(10%), 단체할인(1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시공대수가 1,000대일 경우 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 1,223원 × 1,000대 × 90%(시공대수할인) × 90%(경험할인) × 90%(단체할인) = 891,500원

보험기간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가입도 가능하나 장기간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없으므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1년) 동안 시공하는 모든 도시가스 온수보일러로 인한 가스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어떤 형식으로 발급되는지?

보험가입증명서의 양식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에서는 기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범용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희망하시는 수량만큼 가입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에 따라 동양식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확인서에 보험가입증명서가 첨부된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시면 해당 양식을 송부해드립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받았는데 보험증권은 없는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은 협회가 다수의 회원사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을 일괄 체결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험계약에 회원사 다수가 공동으로 피보험자로서 보험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보험증권은 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협회가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사는 보험가입증명서만을 발급 받게 됩니다. 동 단체보험의 가입효과는 개별계약과 동일하므로 단체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용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시공자의 경우 보상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써, 가스시설 시공작업의 수행 중 가스사고와 시공작업의 완성 후 시공자로서 가스사고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금(법원의 판결금 또는 합의금)과 소송관련 비용 및 기타 협력 비용 등이 있으며, 정확한 보상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시 얼마까지 보상되는지?

동 보험상품에는 보험사가 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설정되는데, 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상한도액인 인명피해(대인배상)의 경

우 1인당 6천만원, 재산피해(대물배상)의 경우 1 사고당 3억원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지급한도는 6천만원이지만 사고 전체에 대한 총 지급한도는 각 피해자당 6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의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가입 이전에 시공한 보일러도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는지?

보험 약관상 최초 가입일자 이전에 시공한 보일러에 기인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가입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갱신일자를 놓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시공한 보일러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무가입 이전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는데, 가스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의무가입대상인 보일러에 대하여 기존에 보상내용이 유사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및 규칙에 명기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보험계약은 전부 떠는 일부 해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비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보상내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하지 아니한다”는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도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 가입이 불가피합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용량 2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시공에 대해서도 임의로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도 동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량 2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도시가스 온수보일러의 경우는 적용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가스배상센터로 문의하시면 보험료를 안내해드립니다.

보상한도액을 높게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상 요구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험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대물배상만을 높게(3억원 초과) 가입할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대인배상을 높게(6천만원 초과) 가입할 경우에는 동보험과는 별도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현대해상가스배상센터(주) / 티아이에스

담당자 : 권성용 팀장

전화 : (02)730-2318

팩스 : (02)730-2319